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72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한민수・박용갑・이연희

박상혁 · 임오경 · 이해식

이정문 • 황 희 • 박해철

복기왕 · 홍기원 · 소병훈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 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의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출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 나. 이사회가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11人으로"를 "13명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을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장의 임면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②		
이사 <u>11人으로</u> 구성한다.	<u>13명으로</u>		
③ 理事는 <u>각</u> 분야의 대표성을	③ <u>방송에 관한 전문성,</u>		
고려하여 <u>방송통신위원회에서</u>	<u>지역성 및 사회 각</u>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u>대통령이 소속</u>		
	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		
	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		
	<u>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u>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	⑦		
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u><단서</u>			
<u>신설></u>	50조제2항에 따른 사장의 임면		
	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